

## (현안리포트) 체제전환국의 외국인 투자 법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들어가며

외국인 투자 유치는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있어서 체제전환 과정상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의 수단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다시 말해 외자유치는 외화획득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며, 자본빈곤으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위한 투자 유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84년 9월 처음으로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작법」,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차례로 제정하였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식 법령의 잔재가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체제전환국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하여, 외자 유치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살피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형태로 외자 유치에 성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데에서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본법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1) 그 밖에 관련 법률로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 투자 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등 50여 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위해 외국기업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중 “3자기업법”으로 대표되는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1986년에 제정된 「외자기업법」, 1988년에 제정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 지적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에서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의 발표와 더불어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본법이다. 동법이 규정한 합자기업(joint stock enterprise)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금을 출자하고 중국인 파트너가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윤은 출자 비율에 의거하여 분배하는 기업형태이다. 외국측 투자자는 자연인이 가능하지만 중국측 투자자는 자연인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합자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는 중국의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sup>2)</sup> 또한 외국측 출자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3)</sup> 투자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 10년에서 3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4년 개정된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50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sup>

「외자기업법」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리와 감독을 행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외자기업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장이 되는 법률이다. 동법이 규정한 외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은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경영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중국 정부에 각종 세금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회사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의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다.<sup>5)</sup> 출자는 전액 외국자본이나 고용은 원칙적으로 중국 노동자로 하도록 되어있고, 제품의 대부분은 수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재료, 연료 등의 물자는 중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sup>6)</sup>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법인 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법인의 자격을 취득한다.<sup>7)</sup> 따라서 외자기업과 중국의 기타 국내기업간 관계는 평등한 국내 법률 관계이며 그들간의 경제 활동은 중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서 규정하는 합작기업(joint enterprise)은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인 파트너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쌍방의 협의하에 설립된 회사로 설립 조건, 권리와 의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이 상호 협의하에 정해진다.<sup>8)</sup> 일반적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조 참조.

3)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참조.

4)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세칙 제100조 참조.

5) 외자기업법 제2조 참조.

6) 최영택, “중국의 시장경제법 체계와 외국투자법에 관한 검토”, 『한국북방학회 논집 제3권』, 한국북방학회, 1997. 146쪽

7) 외자기업법 제8조 참조.

8) 따라서 이를 계약형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투자자들의 사정에 의해 융통성 있는 이익 및

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금, 기술 또는 주요 설비 등을 제공하고 중국인 파트너는 토지, 건물 또는 노동력 등의 현물을 제공한다.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합작기업의 경우 합작쌍방은 약정을 통해 공유 혹은 부분적으로 분별 소유, 부분 공유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쌍방의 공유로 귀속된다.9)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비율이나 제공한 합작 조건으로 형성된 지분은 일반적으로 등록 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10)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합작기업
출자	- 외국인 투자자 현금 출자, 중국인 파트너 현금이나 현물 출자 공동 설립	-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자금 출자, 경영상 모든 책임 부담	-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인 파트너 특정 사업을 위한 쌍방 협의 하에 설립
외국인 출자비율	- 25% 이상	- 전액 외국자본	- 협의에 의한 출자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등록 자본의 25% 이상

### 중국의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 ① 세제 부문의 혜택

외국 투자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여 그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지방세는 면제하며, 그 외 외국 투자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과 경영 기간, 상품 수출 비율에 따라 각각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11) 특구의 세수 우대 정책에 따르면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일정 제품에 대한 제품세(製品稅), 증치세(增值稅)를 면제하였다.12)

경제특구 내 외국 투자 기업이 가공 조립한 수출 상품의 가공 조립 수입은 영업세를 3년간 면제하고, 특구 외자은행의 영업 수입에 대해 1995년 이전까지는 영업세를 면제하였다. 특구 외국 투자 기업이 기업의 건설과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분배 조정이 가능하다.

9)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행세칙 제52조 참조.

10)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행세칙 제18조 참조.

11) 중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7조 참조.

12) 법무부,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법무부, 2005(a), 151~152쪽 참조.

나 원자재(건축재료 포함), 부속품과 직접 사용하는 사무용품, 교통운송수단과 기타 문자는 모두 관세를 면제하고, 특구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수출은 관세를 면제하였다.<sup>13)</sup>

경제특구는 또한 외국 국적 인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화교의 개인 소득에 대하여도 특혜 정책을 실시하였다.<sup>14)</sup> 외국 투자 기업이 특구 내에서 건축하거나 매수한 새로운 건물은 건축 또는 매수한 날부터 3년간 건물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건물(생산, 영업용의 건물은 제외)은 건물세를 면제하였다.

## ② 토지 사용상의 혜택

경제특구의 토지는 유상 사용·유상 양도를 기본으로 하고, 토지 사용 기한의 제한을 두어 토지 사용의 최장 기한은 70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연한은 업종 또는 건설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 사용자는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외상의 토지 사용은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토지의 개발이나 기업 설립에 따른 기초 건설 기간에는 징수 비용의 30%만 납부하고, 간석지 개발 허가를 받아 바다를 메운 토지에 대하여는 10년간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며, 선진 기술과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속하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5년간 토지 사용료의 면제와 면제 후 5년간은 토지 사용료를 반감하여 징수토록 규정하였다. 특히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용지도 위와 같은 5년 면제 5년 반감의 혜택을 주었다.<sup>15)</sup>

## ③ 제품의 내수 판매에 관한 혜택

경제특구 내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국외에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부족한 상품으로 수입해야 되는 경우와 국내의 원재료나 국내에서 생산한 주요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인 경우, 외국 투자 기업이 제공한 선진 기술이나 설비로 생산한 제품에 속하는 경우

13) 광둥성 경제특구 조례 제13조 참조.

14) ① 이러한 인원에 대한 임금·급료는 매월 수입소득에서 법정공제액인 인민폐 800원과 부가공제비용 3,200원을 뺀 후 다시 5% 내지 45% 초과 누진세율에 따른 금액의 반감액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이러한 인원이 특구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한 저축으로 얻은 이자는 1995년 이전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였다. ③ 이러한 인원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 재산임대소득, 주식이익배당, 순이익 소득은 경감하여 10%의 세율에 따라 징세한다. 법무부(2005 a), 전게서 153쪽 참조.

15) 심천경제특구 토지사용료 조정 및 우대 감면방법 제4조 참조.

에는 관련 기관의 비준 및 납세 후 적절하게 증가된 비율에 따라 내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16)</sup>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조치법」도 대만동포가 심천, 주해, 산둥, 하문 등 4개 경제특구에 투자하여 설립한 농공업 기업이 수입 원재료, 부품, 부속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국내 내수시장에 판로가 있고 또 수입 대체 품목일 경우, 선진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산 제품의 30%까지 내수 판매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sup>17)</sup>

## 중국의 외국인 투자 법제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은 법령의 중복입법과 교차입법으로 통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삼자기업법 상호간에 중복된 조항만도 50%를 점하고 있으며, 삼자기업법 상호간과 삼자기업법의 하위법규 사이에도 심사 기한의 상이, 투자 목표와 실행의 불합치, 세수 규정의 불일치 등으로 통일성이 저해된다.<sup>18)</sup>

중국의 외국인 투자보호나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도 법제화 정도가 낙후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의 경우 반드시 중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거나 그 생산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해야 한다거나 원재료, 연료 등의 물자를 중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운용과 생산에 있어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외자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인구 10억 명의 거대한 소비시장,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 등이 그 실질적인 원인이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의 결정권을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이 전적으로 행사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어 이를 통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외자유치가 가능하다.

---

16)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중국 내 내수판매는 장기간 중국정부의 통제로 인해 내수시장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외환수지균형 등의 제도가 사라지면서 납세 후 자유로운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2005 a), 전제서 155쪽 참조.

17)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조치법 제2조 참조.

18) 예를 들어 「합자기업법」 제6조는 “합자기업의 사장과 부사장은 쌍방이 상의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동법의 하위법규인 실시세칙 제34조에서는 “사장은 중국인, 부사장은 외국인이 맡는다”라고 상호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다. 강효백, "WTO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 2004. 37쪽 참조.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은 베트남과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베트남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도모하며,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1987년 제정되었다. 외국인 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위하여 투자자본금을 베트남 내로 이동시키는 조건과 절차, 그 효과에 대한 제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할 수 있고, 특히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장려된다.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은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과 베트남인 간에 서면 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 형태이며, 투자 활동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쌍방간의 계약을 의미한다.<sup>19)</sup> 따라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 당사자간에 계약적 관계만을 창출하지만, 무역 거래와 같은 순수한 경제적 쌍방무역계약은 경영협력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작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sup>20)</sup>은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베트남인이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기업형태이며, 경영협력계약과는 달리 법정출자액만큼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체를 의미한다. 합작기업의 법정자본은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지만, 기관시설이나 투자 장려지역에 투자, 조립사업 및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총 법정자본금의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

외국인단독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이란 자본금 총액을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단독기업은 계획투자부의 특별승인이 없는 한 총투자자본금의 30% 이상이 법정자본금이어야 하고, 최초법정자본금의 삭감은 도중에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3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21)</sup>

건설경영양여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은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상의 독특한 제도로써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베트남의 사회인프라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이다. 즉 건설경영양여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양도하는 방

19) 외국인 투자법 제2조 제9항 참조.

20) 외국인 투자법 제6조~제14조 참조.

21) 외국인 투자법 제16조 참조.

식이다.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건설, 리조트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이다.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형태

	경영협력계약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건설경영양여계약
계약 형태	- 외국인과의 서면 합의에 의한 투자 계약	- 외국인과 합작 계약에 따라 설립 - 법정자본은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	-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출자 - 법정자본이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	-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 -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무상양도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 ① 세제 부문의 혜택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의 외국인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의 25%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로 지불하여야 하지만, ① 산업특구지역의 서비스분야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20%, ② 투자장려사업,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특구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의 서비스기업, 또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산업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15%, ③ 위 ②항의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업, 특별투자장려사업에의 투자, 투자장려 지역 중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산업특구나 수출특구 또는 첨단기술특구의 간접시설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특별투자장려사업에의 투자, 투자장려지역 중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산업특구나 수출특구 또는 첨단기술특구에 투자하거나 이 지역의 간접시설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투자수행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되고, 그 외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은 생산이나 사업 시작일로부터 15년 동안, 15%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2년 동안, 20%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적용된다.<sup>22)</sup>

#### ② 재투자시 혜택

22) 법무부, 『베트남 개혁개방법제 개관』, 법무부, 2005(b) 378~379쪽 참조.

베트남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또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가 2000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제46조의 투자장려지역에 행하여지고, 3년 이상 재투자 자본으로 사용되며, 법정자본이나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본이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완전히 투자되면, 재투자된 액수에 대해 이미 지불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된다.<sup>23)</sup> 환급을 신청하는 재투자는 필요한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은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가장 개방적이고 모범적인 형태의 법규범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 체계는 강제적 승인절차,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계획투자부와 지방인민회의의 강제적 승인 절차이다. 이러한 강제 승인 절차로 인해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가 배제되어 왔고, 투자희망 프로젝트가 베트남 공산당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잠재성 때문에 투자가 거절되기도 했다.<sup>24)</sup>

그러나 2007년 11월 현재 베트남에 투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34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인 102억 달러보다도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적극적인 법제 정비를 통한 체질개선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WTO에 가입하면서 각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내각 개편과 함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합영법,

23)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참조.

24) 법무부(2005 b), 전게서, 383~384쪽 참조.

합작법,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북한 외국인 투자법상 외국투자가의 투자 형태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 기업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2004년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특징
합영기업	- 등록자본을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 이상	- 등록자본을 총투자액의 20% 이상(합영법 제15조 제1항)	- 타인자본 조달 허용, 투자 유치 활성화
합작기업	-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 제한조건 삭제 :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 납부(합작법 제18조)	- 법인세 이외의 세금 과세 여지
외국인 투자기업	-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운영  - 창설의 승인 또는 부결의 법정 시한 50일	- “정해진 지역에” 창설 운영 (외국인투자법 제 3조 제 2항, 외국인기업법 제6조)  - 창설의 승인 또는 부결의 법정 시한 15일로 단축(합영법 제 2조 제2항, 합작법 제7조 제2항, 외국인기업법 제8조)	- 외국인 기업의 설립 허용 지역 확대  - 투자 허용 여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외국 투자자의 편의 도모
기타	- 합영, 합작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관련 반출입 승인에 관한 규정만 존재	- 원자재 수입 및 생산 제품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국내 판매시 관세 부과(합영법 제24조, 합작법 제12조)	- 생산 제품의 북한 내 판매 고려

합영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 당사자들의 출자 비율은 자율적 합의에 따른다.<sup>25)</sup> 종래에는 등록 자본을 투자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년 개정 합영법에서는 투자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2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이는 타인 자본 조달을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한편 가능한 한 금전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표권, 공업도안권, 기술 비결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투자는 등록 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다.<sup>28)</sup>

25) 합영법 제11조 제1항

26) 합영법 제15조 제1항 참조.

27) 신현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정비의 최근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회, 2006, 『북한법 연구』 제9호, pp. 118~119 참조.

28) 합영법 제14조 제2항 참조.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지분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시행규정에서는 외국측 투자자는 등록자본의 30% 이상을 투자하도록 최소한의 출자비율을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출자비율의 상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합작투자의 본질상 북한측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또한 종래에는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4년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조건 없이 “법이 정한 데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소득세 이외의 세금을 과세할 여지가 있다.<sup>30)</sup>

외국인 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그 특성상 외국 투자자가 전액 투자하게 된다.<sup>31)</sup> 종래에는 외국인 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법 개정법에서는 “정해진 지역에” 창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기업의 설립 허용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32)</sup>

### 북한의 외국인 투자 기업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출자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 투자 운영하여 투자 지분에 따라 이윤 분배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 -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 투자지분을 상환하거나 이윤 분배	-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
출자비율	- 자율적 합의에 따름 -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20% 이상	- 외국측 투자자는 등록자본의 30% 이상 투자	- 외국 투자자가 전액 투자

### 북한의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

#### ① 세제 부문의 혜택

29) 합작법 시행규정 제37조 참조.

30) 합작법 제18조 참조.

31) 외국인 투자법 제2조 및 외국인 기업법 제2조 참조.

32) 외국인 투자법 제3조 제2항 및 외국인 기업법 제6조 참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특정품목을 제외한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이윤 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범위 내의 감면,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율 인하 등이 그것이다.<sup>33)</sup> 또한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 우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4)</sup>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및 은행 대부의 우선 제공 등 우대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sup>35)</sup>

## ② 토지 사용상의 혜택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 투자 기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양도 또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sup>36)</sup> 또한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작기업, 합영기업에 대하여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7)</sup> 또한 외국인 투자법에 규정된 장려 사업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sup>38)</sup>

## ③ 재투자시 혜택

외국투자는 북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영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외국투자가가 북한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sup>39)</sup>

33) 외국인 투자법 제9조 참조.

34) 합작법 제6조 및 합영법 제7조 참조.

35) 외국인 투자법 제8조 참조.

36) 외국인 투자법 제 15조 참조.

37) 합작법 제6조 및 합영법 제7조 참조.

38) 외국인 투자법 제8조 참조.

39) 외국인 투자법 제18조 참조.

## 북한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문제점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리를 구현하고 민감한 사법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여 북한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의 우려가 지적될 수 있다.<sup>40)</sup>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선언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보호에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필요하며, 노무관리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기업의 대내외관계에 관한 사법적 규율대상에 대해서까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미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sup>41)</sup>

## 중국과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는 기업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제한하여 중국, 베트남에 비해 투자환경이 불리하다. 또한 채용 및 해고에 있어서 북한의 인력알선기관을 통하도록 하여 노무관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토지임대, 외환송금 등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중국과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노력이 주는 시사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sup>x</sup>의 결정권을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이 전적으로 행사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외자 유치가 가능하였다.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에 대해 수권입법권으로 대표되는 자주권을 부여하여 경제특구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40) 예를 들어,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거나(외국인 기업법 제3조 제2항), 외국인 투자자는 북한의 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동법 제5조) 등은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 당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41) 외국인 투자기업이 문건의 접수, 심사 승인, 감독 통제 사업을 법규정대로의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는 물론 그 위반행위의 엄중성에 따라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155조, 제156조 참조.

둘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베트남의 경제체질에 대한 각종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하여 대미수출을 대폭 상승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입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이에 따른 입법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을 권유하여야 한다.<sup>42)</sup>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기업과 내수시장 육성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국 자본의 초기 투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해외시장으로 수출하여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투자에서 발전하여 해당 국가의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내수시장의 미성숙과 각종 진입장벽의 존재, 소비자의 구매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들의 북한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 자본 도입이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북한 스스로 시장으로서 북한의 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기업투자우대법 등 남측 자본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인 정책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우대하였고(제13조),<sup>43)</sup> 실제로 화교 자본의 협력은 중국 경제특구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남한기업의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42)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입법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 입법 작업에 그치지 않고 법집행기구의 구성, 담당인원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World Bank, *Legal and Judicial Reform Strategic Directions*, 2002. 7. 40~41쪽(<http://www.worldbank.org>); David Bernstein, "Process drives success: Key lessons from a decade of legal reform," in European Bank, *Law in Transition, Ten Years of Legal Transition* p. 7(<http://www.ebrd.org>)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 교류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입법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대만기업의 지방세 및 토지사용료의 감면, 대만기업의 투자특구 설치 등으로 대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은정,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 분쟁의 해결",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 법원행정처, 2003. 145쪽